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1858 판결 모욕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4노1858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현희(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421 판결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만으로는 모욕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2. 판단

#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은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신체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065 판결).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이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수단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고, 그것이 사이버공간에서 공연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TV방송에 출연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불만을 갖고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승려임을 잘 알면서도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훼손할 만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내지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인테넷 카페 게시글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박주영